의 안 번 호

1571

## [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 출연금 동의의 건]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9. 9. 6.(금)
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9. 6.(금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9. 9. 18.(수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주민자치국장 이상찬)

#### 가. 제안이유

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라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O 출연기관 : 한국지방세연구원

O 출 연 금 : 5,680천원

○ 산출기준 :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5

※ 2018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37,865,305천원 × 1.5/10,000

O 주요사업

•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

•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

•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, 구제업무 지원

#### 다. 근거법규

- ○「지방세기본법」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
- O「지방재정법」제18조

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계화)

- 본 동의의 건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2020년도 일 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,
- 「지방세기본법」제15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며, 해당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O 상위법령에 따른 구의 출연 및 출연금액이 적정하므로 특별한 의 경은 없음.

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